

제1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(서면회의)

1. 회의일시 : 2020. 3. 26.(목)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

3. 참석위원 : 한상혁 위원장
김석진 부위원장
허 욱 상임위원
표철수 상임위원
김창룡 상임위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 음

5. 회의내용

① 서면회의 사유

- 「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14조(서면결의) 및 제14조의2(서면보고)에 의거, 의결사항 '가', '나'와 보고사항 '가'는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상·반복적 안전이나 경미한 안전에 해당되고, 의결사항 '다', '라'와 보고사항 '나'는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안전임

② 의결사항

가. 방송광고 법규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(2020-15(서)-087)

- 「방송법」 제73조제2항, 「방송법 시행령」 제59조의2 및 「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 제5조를 위반하여 방송광고를 한 (주)에스비에스에 대해 과태료 부과(안)을 다음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함

< 과태료 부과(안) >

피심의인	위반 법규	과태료 금액
(주)에스비에스	「방송법」 제73조제2항, 「방송법 시행령」 제59조의2제5항, 「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 제5조제1항	1,000만원

나. '유튜브 프리미엄' 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건의 수정의결에 관한 건(2020-15(서)-088)

- 구글LLC(Google Limited Liability Company)가 「전기통신사업법」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의결한 시정조치안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 의결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함.

의결 안건 내용			수정 의결 사항		
(1) 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(1개월 이내) - 중앙일간지(1회) 및 유튜브 서비스의 첫 화면 (5일 동안, 웹페이지·모바일앱)			(1) 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(1개월 이내) - 중앙일간지(1회) 및 유튜브 서비스의 첫 화면 (4일 동안, 웹페이지·모바일앱)		
○ 중앙일간지(1회) 및 유튜브 서비스의 첫 화면 (5일 동안, 웹페이지 및 모바일 화면)			○ 중앙일간지(1회) 및 유튜브 서비스의 첫 화면 (4일 동안, 웹페이지 및 모바일 화면)		
매체	공표포기	공표기간	매체	공표포기	공표기간
웹페이지 및 모바일 서비스 첫 화면	전체 화면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 창	5일미만 (휴업일 포함)	웹페이지 및 모바일 서비스 첫 화면	전체 화면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 창	4일동안 (휴업일 포함)

다.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(2020-15(서)-089)

- (주)딜라이브강남케이블티브이 및 (주)딜라이브경기동부케이블티브이 재허가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수정 재허가 조건(안)에 동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함

< 재허가 조건 >

수정 전	수정 후
16. (주)딜라이브OO케이블티브이는 이전 재허가 기간 동안의 재허가 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(을) 경우,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.	16. (주)딜라이브OO케이블티브이는 이전 재허가 기간 동안의 <u>재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, 이행점검 결과</u>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.

라. 2020년도 종합편성·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(2020-15(서)-090)

-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(주)조선방송과 (주)채널에이에 대해서는 방송의 공적책임·공정성, 편성·보도의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계획을 확인하기 위해 청문절차 등을 거친 후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함
-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(주)와이티엔과 (주)연합뉴스티브이에 대해 붙임과 같이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(붙임1: (주)와이티엔, 붙임2: (주)연합뉴스티브이)하여 재승인하고, 승인 유효기간은 '20년 4월 1일부터 '24년 3월 31일까지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함

※ 상임위원 3인(김석진 부위원장, 표철수 위원, 김창룡 위원)은 본 안건 심의·의결에 찬성하되, 개별 추가의견 제출

③ 보고사항

가.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및 속기록 확인에 관한 사항

- 제13차(3.11.)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회의록 및 속기록 및 제14차(3.18.) 방송통신위원회 서면회의의 회의록을 확인하고 원안대로 접수함

나. 경기방송국 폐지 이후 방송유지 방안에 관한 사항

- (주)경기방송이 폐업을 신고(3.16.)하고 지상파라디오사업권을 반납함에 따라, 이후 방송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원안대로 접수함

※ 향후계획

- 청취자에게 정파시기를 사전에 안내하도록 경기방송에 요청
- 또한, 방송사업자의 사업폐지 등 유사사례 발생에 대비하여 방송국 휴지·폐지 등에 관한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